

제2893호  
2022. 1. 5.

발행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 홍보 전 산 과 장 김 영 혜  
전화 : 3396-4951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1-974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 고 시

제2021-161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 6  
제2021-162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7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1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974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 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3호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감면 규정 신설에 따른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재산세 감면 추진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감면 조례 정비
  - 영 제123조 직접사용의 범위를 주택까지 포함하여 적용 반영
  - 법 제183조제2항 지방세 감면 결정 및 통지 문구 삭제 반영

2. 주요내용

-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의료 기관의 가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4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직접사용의 범위를 건축물에서 건축물과 주택으로 변경(안  
제11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 여부 결정’ 및 ‘그 결과 통지’ 문구 변경(안 제13조 제2항)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세무1과장, 전화: 02-3396-5105, FAX: 02-3396-8699, E-mail: lyh05@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1조 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구세 감면 관련 사항”으로, “신청인에게 통지”를 “구세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안내”로 한다.

별지 서식 전부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4조의2(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p>
<p>제11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p>	<p>제11조(직접사용의 의미) ----- ----- ----- ----- 건축물 및 주택-----.</p>
<p>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생 략)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u>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제13조(감면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구세 감면 관련 사항</u>----- ----- -----<u>구세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안내</u>-----.</p>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161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오장동 148-16 외 2필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15-1	2022. 1. 5.	신청에 따라 마른내로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5.26.	옛 지명인 건천동에서 유래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http://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162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대로 115-1	2022. 1. 5.	건물 철거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대로 117	2022. 1. 5.	건물 철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http://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부여됩니다.